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발 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공동논평] 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날 짜 2016. 4. 19. (총 3 쪽)

논 평

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1.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 중 민간인을 상대로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허용, 인 권보호관 규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해명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 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위략파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 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2. 시행령(안)은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둔다는 테러방지법 8조 에 따라, 10개의 조직을 구성했는데 문제는 전담조직 내에서 국정원의 권 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을 설치하여 정보 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는다. 이처럼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테러활동에 대한 외부통제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더욱이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3. 또한 어제 내놓은 해명 또한 흑세무민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청·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존재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작전을 하는 유일한 경우를 헌법은 계엄으로 상정하고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의 통제(통보 및 해제요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규정된 즉시통보와 해제요구권 같은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내에서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이 요청만 하면 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권한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4.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추후 규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테러대응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 할 대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국정원 권한을 한껏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법 제정 과정에서 테러대응의 실권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하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킹센터, 참여연대

해야 한다.

5. 인권보호관 직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고,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 끝